

5. 교원인사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꽃동네 현도학원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본 대학교의 설립정신인 믿음(信)·소망(望)·사랑(愛)의 지도이념에 부응하여 연구·교육·봉사하는 교원의 임면, 자격, 신분보장, 징계 등에 적용할 교원인사행정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 대학교 전임교원에 적용하며, 비전임교원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2009.3.1.자구수정)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원“이라 함은 정관 제35조에서 정하는 교원을 말한다.
2.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 승진, 강임, 보직전보, 파견,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해임, 면직 및 파면을 말한다.
3. “승진“ 이라 함은 하위직급으로부터 차상위직급으로 임용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소속) 교원은 이 대학교 학부(과)에 소속하여야 한다. (2009.3.1.자구삽입)

제5조(직급 및 직급별 비율) ① 교원의 직급은 조교수, 부교수, 교수 D, C, B, A로 한다.(2021.12.23.개정)

② 교수 D는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의 및 이사회의 임용심사에 통과한 자, 교수 C는 교수 D 임용 후 4년차 연구업적평가를 통해 승급된 자, 교수 B는 교수 C 임용 후 4년차 연구업적평가를 통해 승급된 자, 교수 A는 교수 B 임용 후 4년차 연구업적평가를 통해 승급된 자로 한다.(2021.12.23.개정)

③ 총장은 본교 실정을 감안하여 직급별 인원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④ 교원의 직급별 비율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종류) ① 교원은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명예교수, 초빙교원, 겸임교원, 강사, 석좌교수 등)으로 구분한다.(2009.3.1.자구수정)(2016.4.25.비전임교원추가삽입)(2019.7.23.자구수정)

② 전임교원은 연구와 강의를 동시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강의전담교원, 연구전담교원을 둘 수 있다. 다만, 강의전담교원, 연구전담교원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2010.3.1.자구추가삽입)

제7조(겸직) ① 이 대학교 교원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기관의 전임의 직을 겸임할 수 없다.

② 이 대학교의 교원이 다른 기관의 전임이 아닌 직의 위촉을 받는 경우에는 사전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정년) 교원의 최종계약기간은 65세로 하며 기준 일은 해당 월의 학기말일로 한다.

제 2 장 인사위원회

제9조(인사위원회) ① 교원의 임용 및 기타 총장이 부의 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교원인사위원회에 관한 모든 사항은 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 장 임 용

제10조(임용권자) 교원의 임용은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행한다.

제11조(임용의 원칙) 교원의 신규채용은 정규채용과 특별채용으로 구분하여 채용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원신규채용 세칙으로 정한다.

제12조(교원의 자격) 교원의 직급별 임용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 ① 조교수는 박사학위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 (2012.7.1.자구수정)
- ② 부교수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그 업적이 현저하고 4년제 대학에서 전임교원으로 6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인정되는 자. (2012.7.1.자구수정)
- ③ <삭제> (2012.7.1)
- ④ 교수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그 업적이 현저하고 4년제 대학에서 1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로서 부교수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제13조(임용기간) ① 교원은 학교법인 꽃동네 현도학원의 정관에 따라 계약으로 임용하며, 그 직급별 임용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조교수 4년 (2012.7.1.자구수정)
2. 부교수 5년
3. 교수 정년까지의 기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2008.3.1.수정)
- ② 신규임용의 경우 1차에 한하여 임용기간을 2년으로 한다.
- ③ 교원은 계약기간 내에도 승진할 수 있다. 계약기간 내의 교원을 승진하게 할 경우에는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임용기간 중 정관 제36조 1.2.5.7호로 인하여 휴직한 때의 그 휴직기간은 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의 재임용기간은 당해 직급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012.9.1. 항 신설)

제14조(임용시기) ① 전조 각 항의 임용은 매 학년도 초에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임용계약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15조(특별임용) (2009.3.1.삭제)

제16조(재임용계약) ① 임용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의 경우, 이사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을 받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2005.11.22.자구수정 및 3-7항추가)

- ② 재임용계약시기는 매년 3월 1일, 9월 1일자로 시행한다.
- ③ 당해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 만료일 4월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당해 교원에게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하여야 한다.
- ④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를 임면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⑤ 재임용 심의를 신청받은 임면권자는 동조 6항에 의한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월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2008.3.1.자구수정)

⑥ 교원인사위원회가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2.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3.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⑦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2019.7.23.자구수정)

제17조(연수계산) 교육 및 연구경력년수 계산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경력과 연구경력은 통산할 수 있다.
2. 2개 이상의 기관에서 동시에 교육과 연구에 종사한 경우에는 1개 기관에서의 교육 또는 연구의 년수만 계산한다.
3.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를 가진 자는 학사학위를 가지고 각각 3년 또는 2년간 연구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한다. (2009.3.1.자구수정)
4. 상기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총장이 별도 정할 수 있다.

제1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원칙에서 벗어나는 예외적 임용의 결정은 본교에서의 특수한 필요를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전원 일치 의견의 의결을 거쳐 할 수 있다.

1. 삭제 (2004.3.2.)
2. 삭제 (2004.3.2.)
3. 삭제 (2004.3.2.)
4. 본교 동일 학부 교원의 직계가족 또는 친형제 자매
5. 임용 후에도 본교 이외의 다른 직장에 전임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
6. 삭제 (2004.3.2.)

제19조(구비서류) 교원으로 임용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자필이력서(소정양식) 2부
2. 최종학력증명서(또는 학위증사본) 1부
3.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1부
4. 가족관계증명서 2부(2009.3.1. 자구수정)
5. 주민등록초본 2부
6. 주민등록등본 2부
7. 채용신체검사서 1부
8. 신원진술서 6부
9. 인사기록카드 2부
10. 서약서 1부
11.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 4 장 승 진

제20조(승진시기) 교원의 승진은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 년 2회로 한다.

제21조(승진에 필요한 재직연수) (2008.9.1.내용조정) (2012.7.1.내용조정)

① 교원승진에 필요한 최소한 재직연수는 다음과 같다.

1. <삭제> (2012.7.1)

2. 조교수에서 부교수 - 6년

3. 부교수에서 교수 - 5년

② 제①항의 재직연수 산정에서 당해 직급에서의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은 승진 소요 연수에서 제외한다.

③ 제①항의 재직연수 산정에서 4년제 타대학(교)의 동일 직급 이상에서의 재직연수와 본교의 신규채용 후의 본교 재직연수를 합산할 수 있다.(2019.7.23.자구수정)

제22조(승진) (2008.9.1.내용조정)

① 임용권자는 본교의 교육정신 및 본교의 교육계획에 따라, 교원업적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공정하게 판단하여, 전조의 재직년수를 재직한 교원 중에서 승진과 이에 따른 계약을 할 수 있다. (2009.3.1.자구수정)

②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 전조 제①항의 최소한 재직년수를 거치고 승진을 하지 못한 교원은 1년의 기회를 부여하며, 이 1년 기회기간에서도 전항에 의한 승진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임용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동일 직급에서 임용재계약을 제정 할 수 있다.(2021.12.23.개정)

④ 삭제(2021.12.23.)

⑤ 삭제(2021.12.23.)

제23조(승급)1호봉부터 30호봉까지는 매1년마다, 31호봉부터는 매2년마다 호봉이 승급될 수 있다. 그러나 매 호봉 승급시마다 소정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24조(교원업적평가) 제22조의 교원업적평가는 가톨릭꽃동네대학교 교원업적평가기준시행세칙에 따른다. (2011.7.1. 자구수정)(2021.6.22. 개정)

제25조(학교 발전에의 공헌) ① 다음과 같은 자는 승진에 우대한다.

1. 제3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 또는 외부 포상자는 승진에 있어서 우대한다.

2. 학교 발전에 공헌한 자

3. 탁월한 연구업적을 올려 학교와 나라의 명예를 높인 자

② 학교 발전에 현저한 공헌이라 함은 행정직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거나 학생지도에 적극적으로 힘쓰거나 학교의 제제도 개선에 적극 참여하여 명백한 공헌을 하거나, 또는 이 밖의 공헌을 함으로써 이 학교의 발전에 진력한 것을 뜻한다.

제26조(승진의 절차) ① 승진 또는 승급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교무입학처장은 승진 또는 승급될 교원의 교육·연구업적등에 관한 평가결과를 교원인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018.3.1.개정)(2019.2.8.개정)

③ 교원인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인 이하의 권위 있는 학자의 업적평가 소견을 구하여 교원의 승진 및 승급에 참작할 수 있다.

④ 교무입학처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08.3.1.삼입)(2019.2.8.개정)

제 5 장 보 수

제27조(보수) 전임교원의 보수는 교원연봉계약제운영규정에 별도로 정한다.

제 6 장 신분보장

제28조(신분보장) 교원의 신분보장은 정관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29조(당연해지) 교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히 계약 해지된다.

1. 사망한 때
2. 최종계약기간에 달한 때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발생할 때 (2004.3.2. 개정)
4. 휴직기간 만료후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하지 아니할 때
5.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계약되지 아니하였을 때
6. 징계면직되었을 때 (2004.3.2. 신설)

제30조(의원해지) 본인이 해지를 청원할 때에는 해지시킬 수 있다.

제31조(휴직) 교원의 휴직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32조(직위해제 및 해임) 교원의 직위해제와 해임은 정관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 7 장 상 별

제33조(포상 및 포상상신) ① 총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 포상 및 포상을 상신할 수 있다. (2009.4.15.자구추가삽입)

1.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로와 업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
 2.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다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여 타의 모범이 된다고 인정될 때
- ② 포상은 표창 및 상장으로 구분하며 별도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징계)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처분 할 수 있다.

1. 정관과 사립학교법 및 기타 교육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2021.2.4. 개정)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2021.2.4. 개정)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2021.2.4. 개정)

제35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한다. (2021.2.4. 개정)

- ②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2021.2.4. 개정)
- ③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2021.2.4. 개정)
- ④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2021.2.4. 개정)

제36조(징계절차) 징계의 절차, 재심 등에 관하여는 정관 및 교원징계위원회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다. (2021.2.4. 개정)

제 8 장 보 칙

제37조(이의신청 및 심사) ① 계약, 승진 등 인사에 관한 사항과 연봉책정 등 보수에 관한 사항

에 대하여 교원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005.11.22.자구수정)

② 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의 하여야 한다.
제38조(준용규정)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교원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
계법령 및 규정 또는 기타의 예를 준용한다. (2005.11.22.자구수정)

부 칙

- ① (시행일) 이 인사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규정) 이 규정 이전에 시행된 것은 이 규정에 의거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개정교원인사규정은 2005년11월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2012년 7월 22일 이전 재직교원에 한하여는 이전 규정에 따른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개정된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개정된 규정은 2019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개정된 규정은 2021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개정된 규정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교원계약지원서

교 원 입 용 지 원 서

※ 접수번호 : _____ (접수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1. 초빙분야 : _____

2. 인적사항

최근 6개월
이내 사진

성 명	국문:	한문:	성 별	연 령	만(세)
주민등록번호	-		병 역	필() 미필() 면제()	
종 교			가능 및 회화 가능한 외국어명		
주 소					
연 락 처	전 화		이 메 일		
	휴대폰				

3. 가족사항

관계	성 명	연령	직 업	관계	성 명	연령	직 업

4. 학력사항

구 분	기간 (년·월·일)	전 공	학 위	학교명	총취득 학 점	평 균 평 점
고등학교						
학사과정						만점 평점
석사과정						만점 평점
박사과정						만점 평점

※ 외국소재 학교인 경우 학교명을 원어명으로 기재

5. 교육 및 연구경력사항

기 간	근무년월수	근 무 기 관 명	직 위	비 고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 작성요령

1. 순수 교육, 연구경력 만을 기재
2. 시간강사 경력의 경우 학기단위로 작성하되 비고란에 주당 담당시간을 기재

6. 기타경력

기 간	근무년월수	근 무 기 관 명	직 위	비 고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본인은 귀 대학교의 교수임용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 원 자

(서명 또는 인)

가톨릭꽃동네대학교 총장 귀하

(별표3) 연구실적목록

연구실적목록

(초빙분야: 성명:)

접수번호: _____

구 분	학술지 구분	제 목	발행 기관지명	권(호), 면	연구 자수	발 표 년월일
〈석사학위〉						
〈박사학위〉						
〈대표논문〉						

- ※ 1. 부족할 경우 별도의 A4 용지에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최근 3년 이내(2009.4.1.~2012.3.31.) 발표된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의 논문
에 한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논문은 단독 및 제1저자 논문).
3. 석·박사학위논문은 연도순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학술지는 (S)SCI, A&HCI,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또는 등재후보지
등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하지 않을 경우 기타학술지로 간주함)
5. 연구자수는 단독일 경우 단독으로, 공동연구일 경우 그 수
(제1저자 및 교신저자는 별도로 표기)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학술대회발표, 용역연구(프로젝트)실적 등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연구실적 배점
- 학술지 가중치
 - 160% : (S)SCI, A&HCI 등재학술지
 - 120% :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 100% :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 연구실적물 저자수(n)에 따른 인정
 - 단독 : 100%, 제1저자 및 교신저자 :
(2/(n+2))×100%, 공동저자 : (1/(n+2))×100%